

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봉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제정이유

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- 도지사가 수립하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변경절차를 생략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(안 제3조)
-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우수건축자산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(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)
-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2조)
-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(안 제15조)
- 우수건축자산, 한옥건축, 한옥마을조성 등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을 마련함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제정조례안은 한옥·근대건축물 등 고유의 역사·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, 충청북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·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
 - 첫째, 안 제4조(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지원 대상 사업자)에서는 도지사가 건축자산 유지·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건축자산 유지·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를 양성하고 한옥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둘째, 안 제5조(우수건축자산의 지원)에서는 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함으로써 건축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셋째, 안 제8조(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)부터 안 제10조까지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 - 넷째, 안 제12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에서 도지사가 한옥건축·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을 신축·개축하거나 한옥마을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보급·확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,
 - 다섯째, 안 제15조(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)에서는 도지사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이와 같이 금번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,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. 끝.